
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

- 최근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계기 제도개선 중심으로 -

2026. 9. 2.



관계부처 합동

순서

I. 추진 경과 및 방향	1
II. 주요 제도개선 방안	2
1. 분리보호 현장 판단 강화	2
2. 장애아동 등 보호 인프라 확충	5
3.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 ...	6
4. 재학대 예방 강화	8
5. 기타 제도개선 사항	10
6. 위기아동 조기발견 지속 추진	11

I. 추진경과 및 방향

□ 추진경과

- 최근 아동학대 신고 이력이 있고 취학의무를 면제받은 장애아동(11세)이 학대를 받아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 발생
-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 관계기관 긴급회의를 개최('26.8.13.), 이번 아동학대 사망의심사건에서 나타난 한계점 분석 및 개선방안 논의

사건개요	한계점
'21년 아동학대 신고	피해아동의 아동학대 이력, 취학의무면제 등 관련 정보가 기관 간에 적기에 공유되지 않음
'24년 아동학대 신고	
'25.3.~'26.4. 병원 입원 (장애등록)	
'26.3월 취학의무 면제	
'26.8.2. 아동학대 신고	피해아동의 학대 신고 이력이 있음에도 일시보호조치 등 적극적인 분리보호 미흡
'26.8.3. 아동학대 신고	
'26.8.6. 피해아동 사망	피해아동을 분리보호 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시설 부족

* '취학 관리 협력' 제도까지 있었지만 ... 천안 11세 학대 이력 공유 안 돼(노컷뉴스, '26.8.25.)

* 학대 신고 4번에도 못 막은 죽음...유명무실한 '즉각분리'(아시아투데이, '26.8.11.)

□ 추진방향

- 향후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분리보호 활성화,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 확대 등 주요 제도개선 방안 마련
- 또한 기타 제도개선 사항, 위기아동 조기발견 지속 추진하는 등 촘촘한 아동보호 안전망 구축

Ⅱ. 주요 제도개선 방안

1 분리보호 현장 판단 강화

지금까지는	앞으로는
■ 지방정부·경찰의 분리보호 현장 판단 미흡 ■ 신고 접수 시 경찰이 지방정부에 추후 통보 등 전담하여 진행 결정 ■ 아동학대전담공무원, 경찰 등 아동 학대 대응인력 역량 강화 필요	■ 신고 내용 신속 통보공유 등 분리보호 판단 위한 지침 법령 등 관련 규정 정비 ■ 연2회 이상 재신고 시 즉각분리 최우선 고려 ■ 아동학대 대응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 ■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현행 제도 상 재학대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지방정부의 일시보호 조치, 경찰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응급조치가 가능하나,
 - 경찰 및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분리보호하지 않는 경우 피해아동이 학대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문제

< 관련 법령상 가능한 분리보호 >

◆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즉각분리는 「아동복지법」상 일시보호조치, 「아동학대처벌법」상 응급조치로 가능

대상	조치명	근거	판단 주체 및 주요내용
아동	일시보호 조치	「아동복지법」 제15조제6항	■ (판단 주체) 지방정부 ■ (주요내용) 재학대 우려 등 일정요건 해당 시 아동을 아동일시보호시설,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분리보호
	응급조치	「아동학대처벌법」 제12조	■ (판단 주체) 경찰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■ (주요내용) 72시간 동안 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 격리·보호시설 인도 등 * 72시간 이내 법원에 의한 임시조치 필요
아동 학대 행위자	긴급 임시조치	「아동학대처벌법」 제12조	■ (판단 주체) 경찰 ■ (주요 내용)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퇴거 등 격리, 접근금지 등 * 48시간 이내 법원에 의한 임시조치 필요
	임시조치	「아동학대처벌법」 제12조	■ (판단 주체) 법원 ■ (주요 내용)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퇴거 등 격리, 접근금지 등

- 아동학대 112신고에 대해 경찰이 전담하여 수사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, 지방정부 통보 후 종결

* 지방정부로부터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으며, 별도 수사의뢰가 있는 경우에만 수사 연계

□ 개선방안

① 지방정부·경찰 간 아동학대 공동대응체계 강화

- (지침 개정) 지방정부·경찰이 아동의 학대피해를 확인하는 경우 일시보호 조치·응급조치를 적극 판단할 수 있도록 **관련 업무 지침* 개정** 복지부·경찰청

* ▲ 「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」(아동학대전담공무원·경찰), ▲ 「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」(아동학대전담공무원), ▲ 「아동학대 대응 및 수사매뉴얼」(경찰) 개정

- 경찰의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신속히 신고세부내용을 지방정부에 공유, 동행출동 원칙 강조, 현장에서 공동으로 대응방안 판단 등 절차 보완

* (아동학대 대응 및 수사 매뉴얼 개정) ▲ 동행출동한 경우 현장에서 공동판단 ▲ 동행출동 못한 경우, 상호 신고내용·조치결과 통보하고 추가 조사진행 및 결과 상호 통보

- 1년에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보호조치 또는 응급조치 시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명시

< 지침 개정안 예시 >

현 행	개 정 안
IV 즉각분리 2. 정의 및 요건 ■ (요건) 응급조치까지는 이르지 않는 상황 중에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	IV 즉각분리 2. 정의 및 요건 ■ (요건) 응급조치까지는 이르지 않는 상황 중에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※ 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 접수된 아동에 대해서는 즉각분리 (일시보호조치) 최우선으로 고려
□ 응급조치·보호시설 인도 기준 다음의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 시설로 인도하며, 2회 이상 재신고된 경우, 의료인 등의 신고에는 보호시설 인도를 적극 고려함	□ 응급조치·보호시설 인도 기준 다음의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 시설로 인도하며, 2회 이상 신고된 경우, 의료인 등의 신고에는 보호시설 인도를 최우선으로 고려함

- (법령 개정) 아동학대 신고가 반복되는 가정의 아동, 학대 사망사건 생존 아동 등 보호를 위한 「아동복지법」 상 일시보호조치 요건의 개선 추진^{복지부}

* 반복성 판단 기준을 피해아동에서 가정으로 변경하는 등 「아동복지법」 상 요건 개선 (현행) 동일 아동에 대한 2회 이상 신고 → (개선) 가정 내 아동 대상 신고 총합 2회 이상

- (「아동학대처벌법」 개정) 피해아동 분리보호 응급조치 후 연장을 위한 근거 규정 도입 등 검토^{법무부}

② 현장 대응 인력 확충 및 교육 강화

- (대응 인력 확충)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13명 신규 확충(시·군·구 750명→863명), 아동학대대응활동비* 인상(월 5만원→10만원)** 등 처우개선^{복지부·행안부}

* 관계자 면담, 사실관계 확인 등 아동학대 대응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보전

**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(행안부 훈령)」개정('26.6.30), '27년부터 적용

- (교육 강화) 현장 대응인력(아동학대전담공무원·경찰 등) 대상 지침 개정 사항 포함한 피해아동 보호조치 제도 안내 및 교육 강화^{복지부·법무부}

* 복지부·법무부 공동주관 '아동학대 대응인력 합동교육' 실시 중('23~'24년10회 총 800명 대상, 대면

- 교육 시 피해아동 분리보호 관련 짧은 동영상 등을 제작·활용하여 대응인력의 인지도 제고

③ 지방정부 책임 강화

- (평가지표 개선) 아동학대 관련 지방정부 평가 시 재학대 대응을 지표로 추가 또는 관련 지표 배점 확대 등 반영 추진^{복지부}

* (예)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우수 지역 평가 지표에 “재학대 대응” 신설

2 장애아동 등 보호 인프라 확충

지금까지는	앞으로는
■ 학대피해 장애아동·영유아 대상 분리보호 시설 부족 (피해장애아동쉼터 12개소) ■ 시·군·구 내 시설 부족 시 시·도 연계 역할 부족	■ 장애아동·영유아 특화 분리보호 시설 확충 (+특화학대피해아동쉼터 18개소) ■ 시·군·구 내 시설 부족 시 시·도 연계 역할 강화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학대피해 장애아동 등을 분리보호할 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

* 현재 피해장애아동을 분리보호가능한 시설은 '피해장애아동쉼터'로, 전국 12개소에 불과

□ 개선방안

- (특화 쉼터 확보) 기존 '학대피해아동쉼터' 중 일부(18개소)는 장애아동·영유아 특화된 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 리모델링 추진^{복지부}

- 장애아동에 특화된 '학대피해아동쉼터'의 확충을 위한 설치·인력 기준 등 적정성을 검토하고 관련 예산 지속 확보 노력

- (시·도 책임성 강화) 시·도 공무원이 관할 시·도 내 피해아동 보호시설 연계를 수행하도록 업무 지침 개정^{복지부}

* 아동학대 관련 시·도, 시·군·구 역할 명시

< 유사시설 기준 비교 >

구분	학대피해아동쉼터	특화쉼터 시범사업
관련 법령	「아동복지법」 제53조의2 (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)	좌동
현황	155개소	18개소('27~)
설치 기준	√(전용면적) 100㎡ 이상의 주택형 숙소 √(인력) 6명 √(보호아동) 7인 이하	피해장애아동쉼터와 유사 기준 적용 ※ 영유아·장애아동 1명당 인력 1.5~2명 산정
입소 대상	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18세 미만의 학대피해아동	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대상자 중 영유아, 장애아동

3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

지금까지는	앞으로는
■ 아동학대 이력 및 취학의무면제·유예 정보 공유 미흡 ■ 지방정부-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정보 공유 미흡	■ 아동학대 이력 및 취학의무면제·유예 정보 신속 공유, 협업 강화 ■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피해아동 등 관리 상황 신속 공유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**현행 법령상**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지방정부·교육청 간 정보공유가 가능하며, 장기결석 아동의 정보는 공유 중

< 현행 법령상 정보 공유 근거: 아동복지법 >

제22조의2(학생들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)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결석 학생들의 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공유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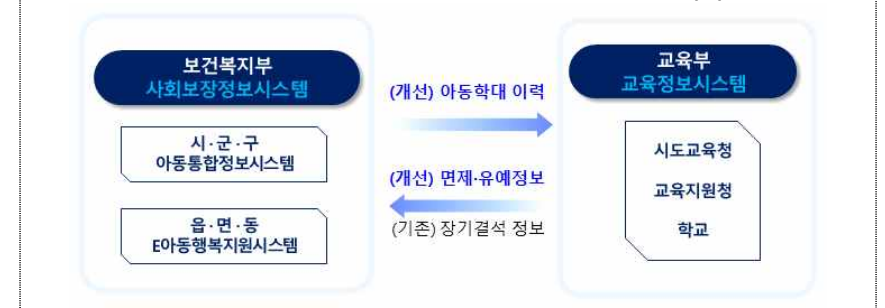
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정보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과 공유하여야 한다.

- 다만 아동학대 이력, 취학의무면제·유예 등 정보가 관계 기관 간 적기에 공유되지 않아 위기아동 지속 모니터링 곤란
- 또한 지방정부-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공유되도록 개선할 필요
- 지방정부에서 사례관리 종결에 대해 판단하나, 현행 아동통합정보 시스템상 사례관리 여부 및 지원 현황 확인 어려움

□ 개선방안

- (정보공유 확대) 취학의무면제·유예 아동의 소재·안전 점검, 이 중 학대 피해 우려 아동의 아동학대 이력을 지방정부로부터 확인·공유⁽²⁶⁾ 교육부·교육청
 - 그 결과 발견된 고위험군 아동은 유관기관(경찰·지방정부·아동보호전문기관) 합동점검* 대상으로 필수 포함 복지부·경찰청
 - * ▲반복적 학대 판단 또는 신고·수사 이력, ▲사례관리 거부 등 재학대 발생 우려 큰 가정 등 고위험 가정 발굴·선정하여 유관기관 합동 가정방문 점검(21~, 반기별 2,000명)
- (시스템 신속 공유) 기존 정보시스템을 개선, 아동학대 이력 및 취학의무면제·유예 정보를 신속 공유하고 기관 간 협업 강화^(27~) 복지부·교육부
 - 취학의무면제·유예 정보를 위기아동 발굴, 보호·지원에 활용하고, 아동학대 이력 정보를 아동의 취학의무면제·유예 처리 시 고려^(27~) 복지부·교육부

< 아동학대 이력 및 취학의무면제·유예 정보 공유 개선(안) >



- 사례관리로 연계한 피해아동 등 사례관리 상황을 지방정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개선^{*}(26.12월) 복지부

* 연계정보 : 서비스 제공일, 대상자(피해아동, 행위자), 서비스 내용, 제공장소, 제공횟수 등

4 재학대 예방 강화

지금까지는	앞으로는
■ 대상자가 사례관리 거부 시 제재수단 미흡 ■ 학대 판단 시 보호자 대상 아동수당 지급 변경 관련 고지·안내 부재	■ 사례관리 거부 시 지방정부·경찰 등 합동방문 대상으로 확대 ■ 학대 판단 후 보호자에게 재학대 발생시 지급 대상 변경 가능성 고지

□ 현황 및 문제점

○ (사례관리 미흡) 사례관리 거부 시 제재조치가 미흡하다는 언론 지적

* 신고받고 가니 “놀다 다쳐” ... 아동학대 상담거부 5년간 1,102건(‘26.8.7. 동아일보)

< 아동학대 사례관리란? >

- 아동의 안전과 재학대 예방에 초점을 맞춰 아동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가족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자원을 연계하고 조정해 나가는 과정

- 사례관리 거부 시 지방정부·경찰·아보전의 합동방문 등이 가능하나 지침상 기준*이 다소 엄격하여 현장 적용 어려움

* ①과거 신고·수사이력 등, ②저연령이나 장애인 등 자기보호 어려운 경우, ③가정 방문 외 피해아동의 안전 등 확인 곤란 3가지 모두 충족(‘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.)

○ (아동수당 지급 부적절)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의 아동수당 지급이 부적절하다는 언론 지적

* 아이 방임해도 아동수당 꼬박꼬박 ... 정부 “조건 달기 어려워”(‘26.8.23. 연합뉴스)

- 아동이 사망한 경우 자동으로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고, 아동학대 등 발생 시 지방정부의 장이 직권으로 지급대상(계좌) 변경 가능

< 아동수당 지급정지·일시중지·지급대상 변경 요건 >

- (지급정지) 아동이 사망하거나, 행방불명·실종 등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지급정지
- (일시중지) 학대피해아동쉼터·일시보호시설 입소 등으로 보호자가 미확정된 경우 급여지급 보류, 보호자 확정 후 소급 지급
- (지급대상 변경) ① 보호자의 아동학대 범죄로 임시조치, 보호처분 등이 있거나, 지방정부 장이 수급아동에게 보호조치를 한 경우
② 보호자의 성품·행실 불량* 등으로 아동수당 지급이 부적절한 경우로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등

* (예시) 아동학대로 판정 및 범죄사실 관련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보호자

□ 개선방안

① 아동학대 사례관리 실효성 강화 복지부

- (규정 개정)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거부 시 지방정부·경찰·아보전의 합동방문 요건을 완화*하여 적극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(‘26)

* ①과거 신고·수사이력 등, ②저연령이나 장애인 등 자기보호 어려운 경우, ③가정 방문 외 피해아동의 안전 등 확인 곤란 → 각 요건 중 어느 하나 해당 시

- 사례관리를 지속적·상습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를 「아동복지법」상 일시 보호조치 요건으로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 수렴 등 검토(‘26~)

- (아보전 역량 강화) 사례관리 질 제고 및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아동 보호전문기관 확대(‘25년 102개소 → ‘26.8월 기준 106개소, 추가 3개소 설치 추진 중)

-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인력이 재학대 발생 가정을 지원하는 방문형 가정회복사업 “방문 똑똑! 마음 똑똑!” 사업 지속 확대

* (‘23) 1,449가정 → (‘24) 2,715가정 → (‘25) 2,834가정 등 지속 확대

- 사례관리 거부자의 원활한 대응을 위한 숙련된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상담원의 처우개선* 및 역량 강화

* ‘27년 정부 예산안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 1인당 인건비 인상(+7.4%)

※ 아동보호전문기관 위상 강화를 위해 현재 법적 명칭인 “상담원” 변경 검토

② 아동수당 지급정지 및 대상 변경 가능성 고지 복지부

-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학대로 판단되는 경우, 재학대 발생 시 아동수당 지급 대상 변경·일시중지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·안내

5 기타 제도개선 사항

□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체계 구축 복지부

- * (개요) 사망 원인과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징후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유사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·제도 개선 제안하는 제도
- 아동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('26.8.4. 시행)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했고, 위원회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'27년 정부안에 포함(150백만원)
- 위원회 구성 및 1차 회의 개최를 통해 운영방향 및 심층 분석이 필요한 사망사건 선정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('26.下)

□ 부모교육 확대 및 홍보 강화 복지부

- 부모가 실제 경험할 수 있는 양육상황을 활용한 온라인 콘텐츠 '긍정 양육 자가진단'(7.1~31.) 운영(10,173명 이벤트 참여)
 - 아동학대 예방의 날(11.19.) 계기로, 긍정양육 자가진단 겨울방학 이벤트 진행 등 긍정양육 홍보 강화
 -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출산·양육에 대한 부모교육 콘텐츠를 양육지원 급여*와 연계(복지로, 정부24, 리플릿)하여 제공
- * 아동수당, 부모급여, 첫만남이용권

□ 아동학대 예방사업 강화 복지부

- 아동학대 판단 전 또는 아동학대에 이르지 않은 일반사례를 선제 지원하는 「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지원 시범사업」 지속 실시
- * ('24) 20개 → ('25) 25개 → ('26) 38개 시·군·구 지속 확대
- 시범사업 본 사업화에 필요한 효과 등을 평가하고 개선사항 도출
- * 「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예방적 지원 강화 방안 연구」('26.5월~'26.10월)

6 위기아동 조기발견 지속 추진

◇ 6세이하 의료미이용 아동 전수조사 지속 실시 복지부·경찰청

□ 조사개요

- (목적) 의료미이용* 전수조사를 통해 위기아동의 소재·안전 확인
- *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미검진, 의료기관 미진료, 정기예방접종 미접종 정보 입수 중
- ** (기준) (2세 이하)의료미이용 정보 입수 시 대상 선정, (3세 이상)의료미이용 포함 44종 정보를 바탕으로 모형점수에 따라 분기별 조사

< e아동행복지원사업 개요 >

- ◆ (내용) 분기별로 44종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의심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, 읍면동 공무원이 아동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시 복지서비스 연계·학대신고 등 지원
- (1~3분기) 분기별 약 3만 명, 모형·기획 발굴
- (4분기) 약 1.5만 명,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
- ◆ (현황) 아동 약 72만 명의 가정방문, 약 10만 명에 서비스 연계, 751명 학대신고·수사의뢰('18~'25)
- ◆ (주요 지표) 의료 미이용, 아동학대 사례관리, 건강보험료 체납, 기초생활 수급 탈락, 가정폭력 정보 등

○ (대상) 위기 가능성이 높은 아동순으로 우선 조사

- (1차 조사^{5.4~7.24}) 0~6세 최근 1년 간 의료기관 미진료 아동 및 0~3세 건강검진 미검진 또는 예방접종 미접종 아동(약 3만명)

□ 1차 조사결과

- 1차조사 대상 30,855명 전체 조사완료, 8,807명(조사완료자 중 약30%)에게 복지 서비스 연계, 4명 학대신고*, 199명 경찰 수사의뢰
- * 4건 중 3건이 방임으로 아동학대 판단, 1건 일반사례
- 수사의뢰 199명 중 ①195명 소재 확인(해외출국 포함)하고 그 중 2명 학대 혐의 입건, ②4명은 소재 확인 중(잠정)

□ 향후계획

- 1차 조사 이후 **신규 입수되는 의료미이용 아동 및 4~6세** 건강검진 미검진 또는 예방접종 미접종 아동 대상 **2차 조사 추진**(약 3만명, '26.7.13.~9.30.)
- 향후 **3~6세 가정양육 아동** 중 의료미이용 아동은 시스템 발굴 시 필수 대상으로 포함*하여 점검하는 등 **고위험군 아동 주기적 점검 실시**(^{'27~})
* (현행) 2세 이하 아동 → (개선) 3~6세 가정양육 아동까지 포함

◇ 의료·보육서비스 연계 통한 조기 발견 강화

- 영유아건강검진* 시 아동의 외상 등 이상을 관찰하도록 「**건강검진 실시기준**」(보건복지부 고시)을 개정하고 '**27년부터 적용**^{복지부}
- *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으로, 아동의 생후 개월 수에 따라 1~8차 검진 실시
- 가정양육하는 2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**건강관리·상담**을 제공하면서, **아동의 안전·건강 모니터링**(^{'26~})^{복지부}
- * 생애초기건강관리서비스: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·영아기 가정에 간호사·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하여 태아·영아 건강·발달 점검, 부모교육 및 심리·정서상담 제공
- 24시간 어린이집 **장기 방치 아동 현황 점검**(^{'26.5월})^{교육부}
- * 17개 시도 조사 결과 방치사례 0건, 지역별 연 평균 1.8회 점검 실시
- 어린이집 **보호자 준수 사항 강화** 및 **무단결석 영유아 관리 사항**을 「2026년도 보육사업안내」 개정*을 통해 안내^{교육부}
- * 무단결석 영유아에 대한 관리·대응 요령 포함, 어린이집 지도·점검 사항 내 무단결석 관리에 관한 사항 명시, 아동학대 예방 가이드북(어린이집·유치원용) 준수 안내